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9, No. 113, pp.87-132
https://doi.org/10.29212/mh.2019..113.3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청일전쟁과 고승호(高陞號)사건의 국제법(1894-1903)

최덕규*

1. 머리말
2. 영국의 "방아용일책(防俄用日策)"과 영·일 접근
3. 청일개전과 영국 상선 고승호 침몰사건
4. 고승호 배상책임을 둘러싼 법리공방과 英淸의 정치적 타협
5. 맺음말

1. 머리말

국제법의 시각에서 볼 경우, 청일전쟁은 그 발발 시점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없었다는 특징이 있다. 청·일 양국의 공식 선전포고일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본 연구는 동북아역사재단 기획연구 결과물임

www.kci.go.kr

인 1894년 8월 1일을 제쳐두고 1894년 7월 25일을 유력한 개전일로 보게 된 것은 영국 상선 고승호(高陞號)의 침몰 사건과 관련이 깊다. 이는 19세기말 유럽의 국제법 학계에서 선전포고를 전쟁 개시로 보았던 시각과 실제 교전이 발발했던 시점을 개전으로 간주하던 시각이 공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개전시점에 대한 국제적 합의 도출을 요구함으로써 제2차 헤이그평화회의(1907)에서 개전의 법제화가 이루어졌다.[1)]

1894년 7월 25일 영국의 인도차이나윤선공사(Indo-Chinese Steamship Navigation Co.) 소속 상선 고승호는 청국정부와 고용계약을 맺고 청국군인을 아산으로 수송하던 중 풍도(豊島)해역에서 일본순양함 "나니와(浪速)"에 의해 정선(停船) 명령을 받고 임검(臨檢), 수색 후 격침당했다. 일본정부가 청국에 대한 선전포고를 공식화한 것은 1894년 8월 1일이었다. 그렇다면 침몰한 영국선적의 고승호는 중립국 영국의 선박인가 아니면 청국의 정규군을 수송중인 교전국의 수송선이었는가? 선전포고가 국제법 규정으로 법제화된 배경에는 전통적인 관습과 규범으로 해결하기 곤란한 사건이 청일 개전과정에서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고승호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의 두 가지였다. 첫째, 일본군함 "나니와"가 고승호를 격침시킨 행위는 합법적인 것인가? 이는 일본이 공식적인 선전포고 이전에 영국국기를 게양한 고승호를 격침시킬 권리가 있었는지를 다투는 문제였다. 고승호 사건 발생 이전에 선전포고가 있었다면 적군을 수송하던 증기선을 격침시켰던 일본의 행위는 합법적일 수 있었으나, 한반도에 청군과 일본군이

1) James B. Scott, *The Proceedings of the Hague Peace Conferences,* Oxford Universuty Press, 1920, pp.623-625. 8개조로 이루어진 개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ve to the Opening of Hostilities)은 1907년 제2차 헤이그평화회의에서 제정되었다. 제1조에서 교전 당사국간의 적대행위는 사전에 명시적인 경고 없이 시작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www.kci.go.kr

집결하는 상황은 전시도 아니고 평시도 아니었다. 선전포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시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평시도 아니었기 때문에 고승호 격침의 합법성을 결정하는 문제는 고도의 법률적 판단을 요구하고 있었다.

둘째, 누가 침몰한 고승호의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하는가? 청국정부가 군대의 수송을 위해 인도차이나윤선공사(印中輪船公司)로부터 고용한 고승호의 피해보상은 용선의 주체인 청국정부가 해야 하는지, 혹은 교전국의 병력을 수송했던 중립국 영국의 선박회사가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이 배를 격침시킨 일본에 그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또한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 따라서 개별 당사국 청국, 영국, 일본 모두가 고승호 침몰 사건에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배상책임의 향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었다. 결국 국제법의 해석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따라 배상 책임자가 달라지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글은 청일전쟁을 고승호 사건에 초점을 맞춰 국제법의 시선에서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청일전쟁은 서구식 훈련을 받은 청국과 일본의 군대가 서구식 무기와 군함 그리고 영국이 독점했던 전신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서구의 전쟁규칙을 준수하며 수행했던 글로벌 전쟁이었다. 따라서 고승호사건의 배상책임 문제뿐만 아니라 전쟁의 승패 역시 서구문명에 개방적이었거나 서구열강의 지지를 받던 국가에게 유리한 구조가 형성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청일전쟁을 서구문명의 산물인 국제법의 시각에서 살펴본 국내 연구는 거의 없다. 청일전쟁에 대한 방대한 국내외 업적들과 성과에 대해 박영준 교수와 서영희 교수에 의해 체계적으로 연구사 정리가 이루어진바 있다. 전자는 1990년대 중반까지의 청일전쟁에 대한 사료, 문헌목록, 연구문헌 해제(전문연구와 방계연구)의 순으로 정리했고[2], 후자는 2000년대 이후 발표된 한국학계의 청일

www.kci.go.kr

전쟁 및 러일전쟁 연구논저를 검토했다.[3] 그러나 이러한 논문들에서도 청일전쟁에 대한 국제법적 관련 연구를 향후 새로운 연구방향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고승호 사건은 한국 해역에서 발생하여 국제적 반향을 불러일으켰음에도, 국내학계에서는 여전히 미진과제로 남아있게 되었다.[4]

따라서 청일개전과 관련하여 고승호 사건과 국제법과 관련된 다음의 문제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고승호 사건에서 비롯된 청일전쟁의 개전시기를 둘러싼 법리공방 2) 고승호의 침몰로 물에 빠진 淸兵들을 사격함으로써 야기된 제네바협약(1864)의 海戰法 적용문제 3) 청일전쟁이 종식(1895)되었음에도 1903년까지 지속된 英淸간의 배상책임을 둘러싼 논쟁이 그에 해당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청일전쟁을 영·러 대결의 구도에서 영국정부의 "방아용일책(防俄用日策)"의 시각에서 고승호 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5] 영국정부는 고승호를 불법 격침시킨 일본을 배제하고 배상책임을 청국에게 전가했기 때문이었다.

2. 영국의 "방아용일책(防俄用日策)"과 영·일 접근

청일전쟁은 동아시아 국가인 청국과 일본간의 한반도 패권을 둘

2) 박영준, 「청일전쟁」, 『한국외교사연구』(김용구, 하영선 공편), 나남출판, 1996, pp.339-416.

3) 서영희, 「청일전쟁·러일전쟁-한반도에서 벌어진 국제전을 바라보는 한국학계의 시각」, 『군사』 100, 2016. pp.119-145.

4) 고승호 관련 국내 학술논문 가운데 조세현의 연구가 있으나 사건의 개요만을 소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조세현, 「청프전쟁과 청일전쟁에서의 해전-해양관련 국제법 사건을 중심으로」, 『中國史硏究』 第84輯, 2013, pp.232-238.

5) 논문에서 활용된 TNA(The National Archives)자료와 『李鴻章全集』은 근대한국외교문서편찬위원회편, 『근대한국외교문서-청일전쟁』, 서울대학교 출판원(近刊)에 수록된 자료를 활용하였음.

www.kci.go.kr

러싼 동아시아 전쟁이었지만 근대 유럽의 국제법 규범을 따랐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개전과정 및 종전 그리고 강화조건에 이르기까지 유럽 열강이 시종일관 관여했고 간섭했던 국제 전쟁이었기 때문이었다. 전쟁의 주체는 청국과 일본이었지만 전쟁의 전 과정에 걸쳐 구미국가의 관심과 이해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유럽 열강의 전쟁 규범이 전쟁의 전 과정에 걸쳐 작동되었다.

청일전쟁에는 단지 유럽의 국제법만 작동된 것은 아니었다. 청일간의 개전방지를 위한 열강의 외교적 중재뿐만 아니라 군함을 포함한 근대적 무기들 그리고 용선계약을 맺은 유럽 국가들의 선박들도 관여되었다. 1894년 8월 21일 일본의 사세보에 포획심판소(捕獲審判所: Prize Court)가 설치된 것[6]도 유럽의 상선들이 직·간접적으로 이 전쟁에 관여되었기 때문이었다.

청일전쟁이 글로벌 전쟁의 성격을 띠게 된 배경에는 여기에 관여된 아시아와 유럽국가들 모두가 준수할 수 있는 보편적인 국제규범이 자리 잡고 있었다. 국제법은 편견이나 편파성이 배제된 보편을 지향했으나, 본질적으로 유럽 문명의 산물이었다. 서구의 법치(法治)문화를 대표하는 국제법은 유럽과 아시아의 통상과 교류 증진과정에서 보다 정교해지고 진화하고 있었지만 그 중심에는 서구의 법의식과 가치 체계가 핵심을 이루고 있었다. 따라서 청일전쟁이 전 기간에 걸쳐 서구 국제법의 규제를 받게 되었다면, 서구문명권의 국가들과 법적으로 대등하고 독립적인 성원으로 인정받은 국가에게 유리한 여건이 될 것임은 틀림없었다.

청일전쟁의 교전국으로서 서구문명권의 일원으로 인정받았던 국가는 일본이었다. 1894년 7월 16일 영국외상 킴벌리(J. Earl of Kimberley)와 주영일본대사 아오키(青木周蔵)가 체결한 신영일통상

6) Takahashi Sakue, *Cases on International Law during the Chino-Japanese war*, London, 1899, pp.11-13. 32개조로 구성된 포획심사소법은 1894년 8월 20일 제정되어 21일 공포되었다.

www.kci.go.kr

항해조약(新英日通商航海條約)은 치외법권 폐지에 성공하여 불평등성을 해소함으로써 대등한 양국관계 수립을 반영하고 있었다.[7] 일본정부의 조약개정(條約改正)정책은 통상조약체결이라는 경제적 측면과는 별개로, 일본이 영국에 의해 평등하고 독립적인 국가공동체의 일원(a recognized equal and independent member of the great family of nations)으로 인정받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었다.[8] 따라서 조약개정은 탈아입구(脫亞入歐)의 실현이었다.

일본이 서구문명권 국가의 일원으로 청국에 전쟁을 도발한 것은 일종의 서구문명과 중국문명간의 문명충돌이었다. 서구문명의 담지자로서의 일본과 중국전통문명의 계승자인 청국간의 전쟁이 歐美의 전쟁법을 준용한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건에 대한 판단은 일본에게 유리하게 결정될 여지가 있었다.

일본이 영국과의 조약개정(1894.7.16.) 직후 대청개전(7.17.)을 결정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일본천황의 어전회의가 대본영에서 처음 열린 7월 17일 일본정부는 청국과의 전쟁을 확정지었다.[9] 7월 19일 일본정부가 청정부에 7월 24일까지 응답하지 않고 병력을 증파한다면 적대행위로 간주한다는 최후통첩을 보낸 것도 개전을 위한 수순이었다.

영국과 조약개정 담판을 마치고 아오키 주영공사가 무쓰외상에게

---

7) 『日本外交文書』, 第27卷 第1冊, pp.90-94. "日英條約調印ノ經緯報告ノ件, (1894.7.17.)", 이 조약은 22개조로 구성되었고 주요내용은 제1조, 내지(內地)개방을 대가로 영사재판권을 철폐하고, 제3조, 편무적(片務的)이었던 최혜국대우를 상호적으로 하며, 제5-8조, 관세자주권을 부분적으로 회복했다.

8) 坂根義久, 「青木周蔵論 - 對英條約改正交涉と外交政略」, 『國際政治』, 1967卷 33号, 1967年, p.10-20. 일본은 법치국가로서 정비되지 않음으로써 생명과 재산을 위임하는 것에 대한 외국인들의 불안감을 조약개정을 통해 해소할 수 있었다. 이에 1895년까지 영일통상항해조약 내용을 반영한 조약을 미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 14개국과 체결함으로써 法權上 구미열강과 대등한 관계로 들어갔다.

9) 稻葉正夫 編, 『現代史資料37:大本營』, みすず書房, 2004. pp.50-51. 추밀원의장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도 천황의 특명에 의거 회의에 참석했다.

www.kci.go.kr

보낸 대영조약개정 담판을 마치고 그 소회를 담은 편지에는 청일전쟁을 앞둔 시점에서 영국의 대일접근(對日接近) 의지를 보여주는 킴벌리의 다음과 같은 견해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 조약으로 일본이 얻게 되는 것은 "청국을 패주(敗走)시키는 것 보다 훨씬 더 우수한 것"이라는 그의 축사였다.[10] 이는 영국이 청일전쟁에서 일본의 승전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의미만은 아니었다. 킴벌리는 이 조약의 성격상 일본정부와 국민들이 국제법에 따라(According to Laws of nations) 개명사업을 발달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았다. 결국 1880년대 초반부터 일본정부가 추진한 조약개정 사업은 마침내 청일개전을 앞두고 1894년 7월 16일 영국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취할 수 있었다.

영일간의 조약개정 과정에서 최후의 걸림돌이 조선에 대한 일본 육군의 전신선 가설이었음은 주목할 만하다. 일본은 청국과의 관계가 긴박해지면서 조인을 서둘렀지만, 킴벌리는 당초 조약 체결일로 정해졌던 7월 14일에 서명을 거부했다. 일본군 공병대가 육군전신선을 인천의 외국인 거류지를 횡단하여 가설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11] 일본은 조선정부의 거부와 항의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목적에서 전신선 가설을 강행했지만, 이는 "조선의 독립"이라는 대청(對淸)개전의 명분과도 모순이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신에 대한 영국의 이해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영국은 조선의 전신선에 연고권(緣故權)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청일개전 시기 西路電線(의주선)과 南路電線(경부선)이라는 양대 노선으로 이루어진 한국의 대외전신은 영국자본의 간접적인 지배하에 있었다. 1885년 영국은 거문도를 점령한 직후, 동양함대 기지인

10) 『日本外交文書』, 第27卷 第1冊, pp.113-114. "對英談判終了ニ付哀情披瀝ノ件, (1894.7.19.)".

11) 『日本外交文書』, 第27卷 第1冊, pp.90-94. "日英條約調印ノ經緯報告ノ件, (1894.7.17.)".

www.kci.go.kr

홍콩과 거문도를 직접 연결하는 해저케이블을 부설(1885.6.3.)[12]하는 한편 조선 최초의 육상 전신선인 義州線 가설 자금을 지원했기 때문이었다. 1885년 7월 17일 체결된 조중전선조약(朝中電線條約)에서 청국이 한반도에 전신선을 가설하되, 그 자금은 청국정부가 홍콩-상해은행(匯豊銀行) 자금 銀10만 냥을 차관의 형식으로 조선정부에 제공한 것도 이와 관련있었다.[13] 따라서 인천-서울-의주를 연결하는 서로전선은 압록강을 지나 청국의 전신망과 연결됨으로써 영국의 전신왕 펜더(John Pender)가 지배하던 글로벌전신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었다.

청일개전 무렵 동아시아의 전신망은 전세계 전신망의 약 65%를 지배했던 펜더의 전신제국이 장악하고 있었다. 1866년 대서양 해저케이블가설에 성공한 펜더는 이후 세계 전신시장을 독점하여 영국중심의 정보통신망을 확충하기 시작했다. 그가 설립한 동방확장전신회사(Eastern Extension Telegraph Co.)는 1871년 런던-지중해-인도-싱가포르-홍콩을 잇는 아시아의 남방노선 가설에 성공했고[14], 같은 해 덴마크의 대북전신회사(Great North Telegraph Co.)는 시베리아-블라디보스톡-나가사키-상해를 연결하는 북방노선을 완공했다.[15] 동방확장전신회사와 대북전신회사는 외형상 각자 독립적인 회사였지만, 후자는 전자의 재정 및 기술지원을 받고 있던

12) Parliamentary Papers. p.12. No. 38: The Secretary to the Admiralty (1885. 7. 27) → J. Pauncefote.

13) 최덕규, 「글로벌전신네트워크와 서로전선의 접속」, 『세계역사와 문화연구』 45, 2017. p.122.

14) Daniel Headrick and Pascal Griset, "Submarine telegraph Cables: Buisiness and Politics, 1838-1939", *The Business History Review*, Vol.75, No.3, 2001. p.560. 1892년 통계에 따르면, 대영제국은 총연장 163,618㎞의 전신케이블을 보유함으로써 세계전신케이블의 66.3%를 차지하고 있었다.

15) Eiichi Itoh, "The Danish Monopoly on Telegraph in Japan - A case study of an unequal communication system in the Far East", *Keio Communication Review*, No.29(2007), pp.88-89.

www.kci.go.kr

"펜더 제국"(The Eastern Cable Empire)의 구성원이기도 했다.[16] 따라서 펜더제국은 영국정부의 후견하에 동아시아 전신망을 독점 지배하는 구조를 이룩함으로써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의 전신이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었다.

결국 일본이 전신을 활용한 근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동아시아의 통신망을 독점하고 있는 영국의 협력이 절대적이었다. 한반도에서 전개되는 군사작전을 도쿄의 대본영에서 조직적으로 지휘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신속한 통신망 구축이 개전의 전제조건이었기 때문이었다. 개전을 앞두고 일본군이 통신보안을 이유로 덴마크 대북전신회사가 부설한 한일해저전선을 이용하는 것보다 국산 케이블을 신설하고자 하였음에도 좌절된 이유는 1882년 대북전신회사와 체결한 협정(1882)의 독점조항 때문이었다. 일본정부가 서명한 대북전신회사 해저선육양면허장(海底線陸揚免許狀) 제6조에 따르면, 나가사키-부산의 해저케이블 가설 대가로, 향후 20년간 일본 열도와 아시아 대륙 및 대만, 홍콩, 루손(Luzon)군도를 연결하는 어떠한 국외케이블도 일본이 자체적으로 가설하지 못하는 의무를 명시하고 있었던 것이었다.[17] 대북전신회사의 자본과 기술지원을 받아 한국전신을 선점하고자했던 일본은 결국 전신기술을 독점하고 있는 글로벌통신기업에 의해 오히려 그들의 대외팽창이 견제되거나 제한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

16) Jorma Ahvenainen, *The Far Eastern Telegraphs - The history of Telegraphic Communications between the Far East, Europe and America before the First World War,* Helsinki: Suomalainen TiedeAkatemia, 1981. pp.51-52.

17) 有山揮雄, 『情報覇權と帝國日本 III, 東アジア電信網と朝鮮通信支配』, 吉川弘文館, 2016. pp.19-25. 일본은 1883년 대한해협을 통해 한반도와 연결하는 한일해저케이블(부산-나가사키)을 부설하면서 자금과 기술력 그리고 부설선박을 보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덴마크의 대북전신회사에 해전전선의 부설을 의뢰한바 있었다.

www.kci.go.kr

일본정부가 개전을 앞두고 해결해야 할 난제는 일본과 한국을 이어주는 외교 전신이었던 義州線의 한계였다. 의주선은 의주-천진-상해-나가사키로 연결됨으로써 만일 청일전쟁이 발발한다면, 천진 및 상해를 통과하는 전보는 방해받을 위험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이었다. 京釜線의 경우, 이는 조선의 국가자산일 뿐만 아니라 관리가 불안정하다고 판단하여 군사·외교적으로 긴급한 상황에서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야마가타(山縣有朋)의 "開戰前着手事項概要建議書(1894.6.23.)"에서 개전 전에 착수해야 할 사항의 하나로 경부 전선(電線) 가설을 제시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18] 카와카미(川上操六) 참모본부 차장이 이 문제를 담당했다.

그러나 상술한바와 같이 조선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일본군의 군용 전선 가설은 그 자체가 불법일 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 일본의 전신망을 독점적으로 부설, 관리해오던 영국의 전신네트워크 지배구조를 교란시키는 행위였다. 이는 근대 동아시아 정보통신망을 지배했던 영국의 승인이 없는 한, 일본 국내도 아닌 해외에서 불법적인 전신선을 가설하여 본국과 소통한다는 계획은 비현실적이었음을 의미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난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주한일본특명전권공사 오토리(大鳥圭介)는 외상 무쓰에게 보낸 기밀전문에서 자신도 조선과 외교 교섭을 통해 전신선 가설에 대한 승인을 획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고 있었다.[19] 오토리 공사가 "形勢一變"을 기대하면서 잠시 유예할 것임을 보고했던 것은 전선 관련 요구를 외교적 담판을 통해 관철시킬 정당성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7월 19일 오토리 공사가 갑자기 조선정부에 직접 전신선 착공을 통고한 것은 형세가 급변했다는 판단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었다.[20] 조선정부의 승인을 받기보다는 강행하기로

18) 有山揮雄, 『情報覇權と帝國日本 III, 東アジア電信網と朝鮮通信支配』, pp. 125-129.
19) 『日本外交文書』, 第27卷 第1冊, pp.611. 鐵道電線ノ建架及新開港ノ困難ノ件, (1894.7.17.)
20) 原田敬一, 『日清戰爭』, 吉川弘文館, 2008. pp.30-31

www.kci.go.kr

방침이 바뀐 것이었다.

일본정부가 돌연 한반도에서 군용전신선 가설계획을 강행하기로 방침을 변경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이는 영국의 수락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영국은 일본의 불법적인 전선가설이 자국의 동아시아 전신지배 정책에 손상을 끼친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결국 이를 묵인했다. 청일전쟁은 근대 전쟁의 핵심 기술인 통신시스템을 독점한 영국의 동아시아정책과 연동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요컨대 일본의 청일전쟁 도발은 동아시아 정보통신망을 독점하고 있던 영국의 승낙으로 가능한 것이었다.

영국의 킴벌리 외상이 일본군의 인천 외국인거류지 횡단전선 가설 건에 대해 항의(7.14.)하자 주영공사 아오키는 본국정부의 훈령에 따라 각별한 반성의 뜻을 전달했다. 1894년 7월 15일 새벽 아오키는 영국외상에게 "일본군 사령관은 군사상의 필요에 따라 전선가설을 추진하다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利害를 고려하지 못함으로써 즉시 이를 중지시키고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의 전문을 보냈다. 7월 15일 영국외상 보좌관이 16일 오후 4시로 외상과의 면담시간을 통보해오자, 주영공사 아오키는 킴버리 외상을 만나 사안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여 의혹을 푼 뒤, 마침내 영국과 조약개정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21]

영국은 왜 일본에게 청일개전의 물꼬를 터줬을까? 이는 영국의 동아시아의 패권과 대청(對淸)무역에 대한 기득권을 위협하는 변수가 등장했기 때문이었다. 러시아가 1891년 5월에 착공한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영국의 특권적 지위에 변화를 야기할 새로운 도전이었을 뿐만 아니라, 영국의 극동함대의 역할에 심대한 변화를 초래했다. 중앙아시아에서 영·러간의 아프가니스탄 위기(1885)가 영국해

21) 『日本外交文書』, 第27卷 第1冊, pp.90-94. "日英條約調印ノ經緯報告ノ件, (1894.7.17.)".

www.kci.go.kr

군의 거문도 점령사건과 연동되었듯, 종래의 영국 극동해군의 주요 임무는 러시아의 유럽 및 중앙아시아로의 남하정책에 대한 양동작전(陽動作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이제 영국의 극동함대는 동아시아로 영향력을 확장해오는 러시아를 직접 봉쇄하는 역할이 부여되었다. 과연 가능할까?

러시아 해군은 1893년 이탈리아를 밀어내고 영국과 프랑스에 이어 세계 3위로 부상했다. 더욱이 러시아의 시베리아철도 부설공사에 자금을 제공하여 러시아와 군사동맹협약(1892. 8. 18.)을 이끌어냈던 프랑스는 러시아와 동맹조약을 체결(1894)하기에 이르렀다. 러불동맹(Franco-Russian Alliance)체제의 등장이 영국에 끼친 영향은 심대했다. 영국 해군이 해군력 2,3위 국가들의 군함을 합친 규모보다 월등한 해군력을 보유할 수 있었던 2개국표준(Royal Navy's Two-Power Standard) 원칙이 러불동맹에 대항하여 재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22] 영국해군은 러불동맹 해군보다 군함 톤수에서 월등히 앞서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항구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러시아에 지정학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되었다.[23] 결국 露佛同盟 해군의 등장은 영국이 세계적 규모의 해양패권을 지탱하고 유지하기 위해 적어도 러일전쟁(1904-1905)까지 러불동맹측과 치열한 군비경쟁을 전개해야 할 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했다.

영국의 극동함대사령관[24] 프리맨틀(Edmund Fremantle) 해군중장이 해군상 스펜서(Lord Spencer)에게 보낸 편지는(1893.10.29.)

---

22) Roger Parkinson, *The Late Victorian Navy: The Pre-dreadnought and the Origins of the First World War,* Boydell Press (2008) pp.169-171.

23) John Berryman, "British Imperial Defence Strategy and Russia: The role of the Royal Navy in the Far East, 1878-1898", *International Journal of Naval History*, Vol. 1, Issue 1, 2002. pp.5-6.

24) 영국극동함대 사령관의 정식표기는 "The Command-in-Chief of the China Station of the Royal Navy"이나 편의상 "영국극동함대 사령관"으로 약함

www.kci.go.kr

영국의 동아시아 해양패권에 대한 위기의식이 투영되어 있었다. "극동함대는 러시아 1개국에 대해서는 전력이 우세하다. 그러나 러불의 해군협조를 고려할 경우, 2개국 해군과 대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대중국 무역이 일정기간 쇠락하게 될 것이고 만일 러시아와 프랑스 함대들이 결합하여 협력할 경우, 그들은 우리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안겨줄 수 있다... 나는 각하께 이 상황을 알리고 우리가 기대치 만큼 결코 강하지 않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25] 프리맨틀 사령관의 경고는 영국 극동함대의 전력을 러불동맹 해군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증강시키기 위해 막대한 재정투입이 요구되는 군비확장정책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영국의 동아시아 해양패권에 대한 위기감은 대외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구되었다. 그 요체는 영국외교의 전통이었던 "영광스러운 고립(Splendid Isolation)"정책의 포기와 동맹정책의 추진이었다. 따라서 동아시아에서 露佛해군동맹에 맞서고 러시아의 시베리아횡단철도 부설에 대응할 수 있는 동맹체제 구축이 그 목표가 되었다.

영국이 러시아의 남하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동맹국으로서 일본을 고려하기 시작한 것은 1885년 거문도 점령사건 직후였다. 이는 영국외상 그렌빌(G. Grenville)이 일본의 대러 접근을 우려했던 주일공사 플런켓(Francis Plunkett)에게 대일동맹 가능성 타진을 지시(6.8.)하면서 교섭의 물꼬가 트였다. 주일영국공사 플런켓은 1885년 2월 외상 그렌빌에게 보낸 기밀보고서(1885.2.16.)에서 일본의 서구지향성에 주목하여 영일간의 우호관계 수립을 건의한 바 있었다. 그 목적은 "일본의 어떠한 주요항구도 외국의 수중에 들어가서는 안되며 향후 우리 선박을 공격하기 위한 기지가 되어서도 안 되기 때문"이었다. 이를 위해 "일본이 러시아의 침략에 저항할 수 있는 정

25) John Berryman, "British Imperial Defence Strategy and Russia: The role of the Royal Navy in the Far East, 1878-1898", p.6.

www.kci.go.kr

도로 충분히 강력하고 우리의 상품을 대규모로 소비할 수 있는 번영되고 풍요로운 국가가 되도록 관심을 가져야한다"는 것이었다.[26] 그렇다면 러시아에 맞설 수 있을 만큼 일본을 강력하고 번영된 국가로 만들기 위한 영국의 해법은 무엇인가?

플런켓이 제시한 해법은 조약개정을 위한 대일교섭에서 "보다 관대한 원칙(more generous principle)"을 채택한다는 것이었다.[27] 이는 영일간의 조약개정 교섭이 동맹체결의 선결조건인 대등한 양국관계 정립의 초석을 놓는 과정이었음을 의미했다. 이 교섭을 통해 영국과 기존의 불평등조약을 개정하게 될 일본은 평등하고 독립적인 서구문명권의 일원이 될 것이었다. 이는 일본이 영국과 대등한 국가간의 동맹체결이 가능한 위상을 확보할 수 있는 지름길이었다. 결국 일본이 조약개정을 통한 탈아입구(脫亞入歐) 정책의 성패는 영국의 국가적 이해와 부응여부에 달려있었다.

영국이 일본을 서구국제법 체제에 편입시키려는 노력과 더불어 관심을 가졌던 또 다른 과제는 군사원조였다. 이는 영국해군과 일본해군이 효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1888년 영국 극동함대 사령관 해밀턴(R.Vessey-Hamilton) 제독은 영일동맹을 지지하면서 다음의 논거를 제시했다. "중국과의 동맹이 유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우리는 그들이 저지르게 될 야만적 행위로부터 불명예를 감수할 대비를 해야 한다. 일본인들은 훨씬 더 유용한 동맹국이 될 것이며, 그들의 정치가들, 해군과 육군 장교들 그리고 육해군 시스템은 중국의 그것보다 훨씬 우리와 일치한다"는 것이었다.[28]

---

26) Fauziah Fathil, *British Diplomatic Perceptions of Modernization and Change in Early Meiji Japan, 1868-90,* Submitted for the Degree of PhD in History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University of London, 2006, Published by ProQuest LLC(2017). p.206.

27) Fauziah Fathil, *British Diplomatic Perceptions of Modernization and Change in Early Meiji Japan, 1868-90,* p.207-213.

28) Fauziah Fathil, *British Diplomatic Perceptions of Modernization and*

www.kci.go.kr

영국해군장교 존 잉글스(John Ingles) 대위가 일본해군 자문관으로 봉직(1887-1893)하면서 일본해군의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했던 시기에 영국해군의 장비, 훈련교본과 규범집 등이 일본에 전수되었다.[29] 1890년대 초 일본정부가 대규모의 군함과 해군장비들을 영국의 암스트롱(Armstrong) 회사에 발주한 것은 영국의 해군협력에 대한 보답이었다. 속사포가 장착된 신형순양함들은 포탄을 뒤에서 장전하는 후장총포(後裝銃砲)보다 6배 빨리 사격했기 때문에 청일전쟁의 황해해전에서 그 위력을 입증했다.[30] 따라서 일본해군을 동아시아에서 러불동맹 해군에 맞서기 위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국가는 영국이었다.

영·일 접근은 영국의 일방주의의 산물만은 아니었다. 일본정부 역시 고립주의를 버리고 우호국을 선택하여 동맹체결에 나서야 할 절박함을 느끼고 있었다. 이는 러시아의 시베리아철도 부설을 아시아에 대한 침략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영국의 킴벌리 외상과 조약개정을 이끌어낸 주영공사 아오키는 제1차 야마가타(山縣有朋) 내각의 외상 시절 러시아를 동아시아에서 축출해야한다는 외교정략의 목표와 수단을 제시한바 있었다.[31]

아오키가 러시아의 아시아 침략에 경종을 울린 논거는 첫째, 러시아가 부동항을 극동에서 구하려고 기도함에 따라 淸韓 특히 조선에 대한 다양한 외교적 권모술수를 펼치고 있으며 둘째, 섬나라인

Change in Early Meiji Japan, 1868-90, p.219.

29) 原田敬一, 『日淸戰爭』, p.46. 잉글스 해군대위가 일본해군대학교 제3기 학생에게 강의했던 것이 번역되어 1892년 2권의 『海軍戰術講義錄』으로 간행되었고, 1894년 제2기 학생에 대한 강의는 해군문고에서 3권의 『海軍戰術講義』로 출간된 바 있었다.

30) John Curtis Perry, "Great Britain and the Emergence of Japan as a Naval Power", *Monumenta Nipponica,* Vol. 21, No. 3/4 (1966), pp.305, 314-316.

31) 하라다 게이이치, 최석완 옮김, 『청일·러일전쟁』, 어문학사, 2013, pp. 46-48. 坂根義久, 「靑木周蔵論 - 對英條約改正交涉と外交政略」, pp.22-23.

www.kci.go.kr

일본에 압박을 가해 세력범위를 축소시키고 외교정략상의 활동을 견제함으로써 국가의 독립이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淸韓日에 위협을 주고 있는 러시아를 동아시아에서 축출하는 것이 일본정부의 외교정략의 핵심을 이루게 되었다.

그렇다면 러시아를 어떻게 축출할 것인가? 야마가타 수상과 아오키 외상 모두 軍備優先을 강조했다. 그러나 외교관으로서 아오키는 일본 혼자만의 힘으로는 곤란하므로 동맹론에 의한 일본군비의 열세를 만회하고자 했다.[32] 따라서 일본과 영국은 반러 공동전선 구축을 위한 동맹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유라시아 국가로서의 지리적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시베리아횡단철도 부설을 주도했던 러시아 재무상 비테(С.Ю.Витте)는 이 철도가 일본이 청일전쟁을 도발한 원인이 되었음을 간파하고 있었다. 비테의 견해에 따르면, 유럽열강과 일본이 멀지않은 장래에 청국이 분할될 것으로 예견하고, 이 경우 시베리아철도가 러시아에게 엄청난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이기(利器)로 간주하여 이를 경계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1895년 3월 승전국 일본이 대청(對淸)강화조건으로 요동반도의 할양을 요구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비테가 대일(對日)강경책을 주도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33] 유럽과 아시아의 중간에 위치한 지정학적 장점을 이용하여 시베리아철도를 통해 유럽의 상품과 아시아의 원료를 운송하고자 했던 재무상 비테의 러시아 산업화 정책은 모스크바를 세계무역의 중심으로 부상시키고자 했던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청일전쟁의 단초가 되고 말았다.

32) 坂根義久, 「青木周蔵論 － 對英條約改正交涉と外交政略」, pp.22-23.

33) Красный Архив. Исторический журнал. М., 1932. Т. 3(52). Журнал Особого совещания (11 апреля) 30 марта 1895 г

www.kci.go.kr

3. 청일개전과 영국 상선 고승호 침몰사건

영국정부가 "신영일통상항해조약"에 서명(1894.7.16.)한 것은 일본에게 對淸개전을 인정한 결재 사인이었다. 이는 조약개정이 영국의 "防俄用日策"의 산물이었음을 의미했다. 주일영국공사 패지트(Ralph Paget)가 일본의 조선파병에 대해 보고(6.7.)하자,[34] 영국정부가 최우선의 관심을 집중시킨 사안이 바로 러시아의 조선 문제 개입 가능성이었다. 영국 외무성에서 영국해군의 거문도철수(1887)의 전제조건이었던 1886년 이홍장-라디젠스키(Н.Ф. Ладыженский) 협약을 재검토하게 된 원인도 시베리아철도를 부설중인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지 않기로 약속한 8년 전의 구두협약을 지킬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었다.[35]

러시아의 한국문제 개입에 대한 영국정부의 우려는 주영독일대사 하츠펠트(Count Hatzfeldt)에게 조선 문제에 대해 열강의 공동간섭을 요청(1894.7.9.)하면서 표면화되었다. 영국외상 킴벌리의 제안에 따르면, 독일이 청・일 양국과의 무역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전쟁으로 인한 통상의 손실을 방지한다는 것이 그 명분이었다. 하츠벨트가 간섭의 본연의 목적을 문의하자, 킴벌리는 러시아가 영국의 거문도 철병조건으로, 한반도의 일부를 점령하지 않겠다는 보증한 바 있음을 상기시켰다.[36] 영국은 거문도사건 이후 조선의 현상변경 사태

34) TNA. FO. 405/60/2, June 7, 1894. Mr. Paget to the Earl of Kimberley.

35) TNA. FO. 405/60/3, Memorandum by Mr. F. Bertie.(1894.6.8.). 버티의 메모에 따르면, 영국은 청국에게 러시아가 영흥만(Port Lazaleff)을 점령하지 않는 조건으로 거문도철수를 제안했다. 영청간 교환된 청국정부의 각서에는 영국이 거문도에서 철수한다면 한국의 영토를 점령하지 않겠다는 러시아의 보장(러시아는 구두 보장하였음)이 기록되어 있었다. 영국은 청국이 이 보장을 배서함으로써 거문도에서 철수하였다.

36) TNA. FO. 405/60/61, July 9, 1894. The Earl of Kimberley to Sir E. Malet. 청일전쟁 직후 러시아 주도의 대일 삼국간섭(1895.4.23.)이 성사되자 영국의회에서

www.kci.go.kr

가 발발할 때마다, 가장 우려한 바가 바로 러시아의 한반도 부동항 획득 가능성이었다.[37]

거문도사건 이후 영국과 일본의 반러 공동전선 형성의 주요 근거였던 러시아의 시베리아횡단철도는 한반도의 부동항과 연결되어야만 본연의 부설 목적을 이룰 수 있는 한계가 있었다.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러시아 산업화의 대동맥으로서 연중무휴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凍港이었던 블라디보스톡을 대신하여 부동의 해양출구와 접속되어야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러시아 특유의 지정학적 한계는 러시아와 접경한 한반도의 부동항 획득문제와 연동되는 구조를 형성시켰다.

이 철도가 착공되기 전, 러시아의 한반도 부동항 획득 시도를 영국이 사전에 차단시킨 법적근거는 이홍장-라디젠스키 협약(1886)이었다. 이 협약은 러시아 외교관 라디젠스키와 청국의 이홍장이 천진에서 만나 조선의 독립과 영토보전에 합의함으로써 영국의 거문도 철수의 전제조건이 되었다. 이는 한반도를 둘러싼 영러대립 과정에서 거문도를 2년간 점령했던 영국 해군이 명예롭게 퇴각(1887)하는

제기된 한반도의 영토보전에 대한 러시아의 약속 준수 여부에 대한 대정부 질의(1895.6.13.)도 같은 맥락이었다. 영국외무성에 대한 아슈메드-바틀렛(E.Ashmead-Bartlett) 의원의 질문의 요지는 영국의 거문도 철수 당시 러시아정부가 이행하기로 한 한반도의 어떠한 곳도 점령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여전히 잘 지켜지고 있는지 그리고 러시아의 서약은 조선의 남서부 영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였다. 이는 삼국간섭 이후 러시아가 한반도 서남부의 항구 점령가능성을 우려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부외상 그레이(E.Grey)는 한국의 영토를 점령하지 않겠다는 러시아의 약속은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러시아의 약속은 한국의 영토만을 언급했다고 답변하고 있었다.(House of Commons Hansard, Vol.34. 13 June 1895, Sir Ellis Ashmead-Bartlett.)

37) 영국의회는 한반도 현상변경 가능성이 고조될때마다 지속적으로 영토보전에 대한 러시아의 약속준수 여부를 체크했다. 이러한 입장은 러일전쟁에서 패퇴한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완전히 물러날 때까지 지속되었다. 이는 1900년 3월 30일 한러간의 마산포(馬山浦)조차협정 체결 이후에도 영국의회의 의사록에서 재확인된다.(House of Commons Hansard, Vol.83. 28 May 1900, Sir Ellis Ashmead-Bartlett)

www.kci.go.kr

명분이 되었고 동시에 한국의 독립과 영토보전을 영러 양국이 공동 보장한 국제협약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청일개전 이전, 한반도의 독립과 영토보전은 2겹의 국제협약을 통해 보장되어 있었다. 청국과 일본간의 천진조약(1885.4.18.)이 동아시아 차원의 보장이었다면, 러시아와 영국이 조선의 현상유지(Status quo)와 영토보전을 약속한 이홍장-라디젠스키 협약은 유럽열강 차원의 보장책이었다.[38]

이홍장이 일본군의 조선출병에 대해 보고받고 영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에 중재를 요청한 원인도 여기에 있었다. 주청러시아공사 카시니(А.П.Кассини)는 외상 기르스(Н.К.Гирс)에게 보낸 전문(1894.6.24.)에서 이홍장이 한반도의 현상유지에 대한 이-라디젠스키 협약에 근거하여 조선의 내정개혁 관련 일본의 제안을 일축했고, 청일간의 대립에 러시아의 중재를 원한다고 보고했다.[39] 그럼에도 이홍장의 중재요청에 대한 러시아의 반응은 기대와는 달리 부정적이었다.

러시아의 이같은 반응은 주한러시아공사 베베르(К.И.Вебер)의 전문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었다. 그가 러시아 외무성에 보낸 전문(1894.7.4.)에 따르면, 동학 농민운동이 지방관의 학정에서 비롯되었고 정부에 반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파병은 사태를 복잡하게 할 수 있다고 이홍장에게 경고했음에도, 이홍장은 조선의 소요사태를 과대 포장하여 파병하기로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요컨대 청국의 파병결정은 조선에 대한 종주권 과시가 그 목적이었다는 것이었다.[40]

따라서 베베르는 한반도 사태의 단초를 제공한 이홍장에게 다음

38) А.Л.Нарочницкий, Колониальная Политика Капиталистических Держав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1860-1895, ИАНС.Москва, 1956. p.395.

39) Красный Архив. 1932. Т. 1-2. Телеграмма посланника в Пекине министру ин. дел. 24 (12) июня 1894 г.

40) Красный Архив. 1932. Т. 1-2. Телеграмма поверенного в делах в Сеуле. 4 июля (22 июня) 1894 г.

www.kci.go.kr

의 2가지 사실을 분명히 했다. 첫째, 만일 조선 국왕이 청국에 파병 요청을 했다면, 이는 명백히 원세개(袁世凱)의 강압에 따른 것이다. 왜냐하면 청국군 못지 않게 잘 훈련된 조선군 15,000명이 있었기 때문에 청국의 원병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둘째, 조선의 안녕은 청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일본의 주요관심사이기도 하다. 조선을 속국으로 간주하는 청국의 정책은 기대한 결과를 이룰 수 없을 것인바, 조선 문제에 관심이 있는 주변 국가들의 간섭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었다.[41]

결국 러시아는 이홍장의 기대와는 달리 한국문제에 대한 개입을 거절했다. 러시아 외무상은 차르에게 올린 상주서(1894.7.8.)에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었다. "이홍장의 중재요청이 마치 조선의 내정개혁에 러시아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양보한 것처럼 보이나, 외무성은 조선의 내정개혁에 개입함으로써 한국문제에 끌려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것이었다.[42] 러시아는 한반도의 현상유지에 대한 영국과의 약속과는 별개로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유지하려는 이홍장의 대조선정책에 속박될 이유는 없었다.

이홍장은 7월 14일 주청공사 카시니로부터 러시아의 한국문제 개입 불가방침을 전해 듣고 전쟁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43] 이날은 일본정부의 제2차 절교서가 청국정부에 전달된 날이기도 했다. 일본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주러일본공사 니시(西德二郎)로부터 러시아

41) Бэлла Пак, Российский Дипломат К.И.Вебер и Корея, ИВ РАН: Москва. 2013, p.134. 주한러시아공사 베베르는 휴가가 예정된 주청공사 카시니를 대신하여 주청임시대리공사직을 수행하기 위해 현지로 부임하는 여정에서 천진에서 이홍장과 회동(6.8.)하였다.

42) Красный Архив. 1932. Т. 1-2. Всеподданнейшая записка министра ин. дел. 8 июля (26 июня) 1894 г. Отказ России от посредничества в корейском вопросе.

43) Красный Архив. 1932. Т. 1-2. Телеграмма посланника в Пекине министру ин. дел. 14 (2) июля 1894 г. Подготовка Китая к войне с Японией.

www.kci.go.kr

의 군사간섭이 없을 것이라는 정보가 도착했기 때문이었다.[44]

일본정부가 대청개전을 위한 첫 조치는 의주선의 절단이었다. 의주선은 조선 최초의 육로전신선이었지만 청국이 덴마크 기술자 뮬렌스테트(H. J. Muhlensteth)를 고용하여 가설한 후, 청국전보국(淸國電報局)의 조선국총판(朝鮮局總辦) 이육삼(李毓森)의 관할하에 있었다.[45] 청국은 전쟁수행을 위해 한반도로 물자와 지원군을 보내야했던 상황에서 7월 22일 심야에 일본군에 의해 의주선이 절단됨으로써[46] 개전 초기 극히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청국은 전신선 절단 사태에 대응하여 두 가지 조치를 취했다. 첫째, 한성전신국 파괴에 대비하여 개성에 별도의 전신국을 개설하고 둘째, 이홍장은 한국의 의주선과 경부선 가설에 참여했던 뮬렌스테트를 서울로 파견하여 한성전신국을 관할토록 했다. 이는 서양인의 국제적 지위를 빌려 전보국의 안전을 보장받으려는 고육책이기도 했다. 뮬렌스테트가 승선했던 砲艦 '조강(操江)'호가 고승(高陞)호와 함께 대고(大沽)를 떠나 아산(牙山)으로 출발했던 시점은 1894년 7월 23일 오후였다. 7월 25일 아침 '조강'호는 풍도(豊島)해전에서 고승호를 호위하던 중 일본 해군에 나포됨으로써 뮬렌스테트는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채 일본의 포로가 되고 말았다.[47] 그러나 풍도해전에서 침몰한 영국선적의 고승호는 배상책임을 둘러싸고 국제법정에서 새로운 전쟁을 펼치게 되었다.

고승호는 1883년 건조된 철선으로서 등록톤수 1,355톤급의 윤선

44) 原田敬一, 『日淸戰爭』, 吉川弘文館, 2008. pp.28-29.
45) 冯超, 「甲午战争时期中国电报局的作用」, 『安徽教育学院学报』 25(5), 2007, pp.23-24.
46) 有山揮雄, 『情報覇權と帝國日本 III, 東アジア電信網と朝鮮通信支配』, 吉川弘文館, 2016. pp.140-141.
47) 冯超, 「甲午战争时期中国电报局的作用」, p.25. 결국 청일전쟁 이후 한국에 도착한 뮬렌스테트는 한국전신 사무에 종사하길 원했다. 그가 독일영사를 통해 외부대신 김윤식에게 전달(1895. 7. 9.)한 것도 바로 한국전보 사무 관련 취직 신청서였다. (『舊韓國外交文書』 15(德案 1), 고종 32. 5. 17.)

www.kci.go.kr

(輪船)이었다.[48] 선주는 런던의 인도차이나윤선공사(印中輪船公司: Indo-Chinese Steamship Navigation Co.)였고 상해의 이화양행(怡和洋行: Jardin, Matheson & Co. Ltd.)에서 운용을 맡고 있었다. 고승호가 7월 14일 福州에서 상해에 도착하자 청국에 고용되어 천진으로 이동(7.17.)했던 이유는 청국병사들을 수송한다는 용선계약에 따른 것이었다. 청국정부가 이 배를 고용하면서 홍콩·상해은행에 4만 파운드를 예치한 것은 선전포고 전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유사시에 대비하여 예치금을 이화양행에 지급한다는 계약조건 때문이었다.[49]

영국 상선을 고용하여 청국군대를 아산으로 수송하려는 이홍장의 구상은 청일간의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에서 위험부담이 큰 모험적인 작전이었다. 총리아문 역시 영국이 大東溝를 통한 북로(北路)의 이용을 조언한 점을 감안, 아산으로의 병력 증파의도가 적절한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었다.[50] 그럼에도 이홍장은 병력 2,500명을 통솔하여 아산에 상륙한 직예제독 섭지초(葉志超)의 두 가지 요청(7.18.)을 고려해야 했다. 섭(葉)제독은 첫째, 해로를 통해 평양으로 이동해서 주둔하라는 이홍장의 명령에 대해 선박으로 이동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육지의 요충지를 차지하여 기회를 살펴 이동, 주둔할 수 있도록 허락을 요청했고 둘째, 한성과 부산을 왕래하는 倭軍의 남로(南路)를 차단하기 위해 부대의 증파를 요구한 것이었다.[51] 따라서 청일간의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대규모 군대를 신

48) 『日本外交文書』, 第27卷 第2冊, "在長崎英國海事裁判所ニ於ケル高乘號事件宣告書寫送付ノ件, (1894.8.20.)". pp.368-371.

49) Takahashi Sakue, *Cases on International Law during the Chino-Japanese war*, London, 1899, p.26. 선원은 영국인 선장 갤스워디(Thomas R. Galsworthy)와 기관사 등 6명의 영국인을 포함하여 총 64명이었다.

50) 李鴻章(1894.7.19/光緖二十年六月十七日) → 總署(1894.7.20), 『李鴻章全集』 24, 顧廷龍·戴逸 主編(合肥: 安徽敎育出版社, 2007) p.146.

51) 李鴻章(1894.7.20) → 總署, 『李鴻章全集』 24, p.146.

www.kci.go.kr

속히 수송하기 위해서는 외국상선을 빌려야했던 것이다.

이홍장의 지시에 따라 고승호의 용선계약을 체결했던 인물은 북양수사(北洋水師)의 도원(道員) 라풍록(羅豊祿)이었다.[52] 그가 윤선공사의 대리점 이화양행과 체결한 용선계약(7.17.)의 골자는 1) 고승호는 수송선으로 사용되며, 2) 영국깃발을 게양하는 것이 안전하다면 반드시 게양해야 하며 3) 포획되었을 경우, 이미 합의된 구매대금(purchase money)을 이화양행에 지불하며 4) 공식적인 선전포고가 이루어질 경우, 고승호는 가장 가까운 청국항구로 돌아가 청국깃발을 게양한다는 것이었다.[53] 따라서 계약서상에는 고승호가 영국 깃발을 게양한 상태에서 침몰한 사례에 대한 처리규정은 없었다. 교전국 군함이 제3의 중립국 상선, 그것도 영국 국기를 게양한 영국선박을 격침시키는 행위는 예상 밖의 상황이었다.

영국기를 게양한 고승호가 일본군함에 의해 침몰된 경위는 무엇인가? 이는 영국의 지원을 받는 일본이 한반도에서 청일전쟁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전략에서 비롯되었다. 朝淸간의 통신망과 해상 교통로의 차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이 전략은 한편으로 의주선의 절단과 다른 한편으로 서해 제해권 장악 작전으로 표출되었다. 아산에 상륙해있던 섭제독의 군대를 섬멸하기 위해서는 청국군의 한반도 추가파병 저지가 최우선의 과제였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본영의 출동명령에 따라 연합함대 사령관 이토(伊東祐亨)가 본대·제1유격대・제2유격대로 구성된 순양함과 해방함(海防艦) 13척 등을 통솔해서 사세보(佐世保)를 출발(7.23.)하여 도착한 곳이

52) 라풍록(1850-1903)은 복건선정학당(福建船政學堂) 출신으로 영어에 능통하여 이홍장 막부의 핵심 성원이자 청말 외교의 중신(重臣)이었다. 1895년 이홍장을 수행하여 청일전쟁 종전교섭에 참여했고 1897년 駐英公使를 맡아 고승호사건 배상문제를 담당하였다. 杜志明, 「晚淸駐英公使羅豊祿與高陞號賠償案」, 「黑龙江史志」, 2014年 01期, p.38.

53) Mr. Denby to Mr. Gresham, July 28, 1894, *Foreign Relations of United States,* 1894. pp.41-42.

www.kci.go.kr

흑산도(7.24.)였다.

일본의 연합함대가 사세보항을 출발하던 날, 주청러시아무관 보가크(К.И.Вогак) 대령은 영국함대가 거문도에 정박해있다고 보고했다.[54] 주일러시아공사 히트로보(А.С.Нитрово) 역시 영국함대가 거문도에 한달간 주둔하기 위해 군수품을 준비하고 있다는 첩보(1894.6.8.)와 한국해역을 순항중인 프랑스 군함 함장으로부터 동일한 보고를 받았다는 주일프랑스 전권공사 듀발(Georges Dubail)의 전갈을 외무상 기르스에게 보고했다.[55] 6월 23일 요코하마에 정박중인 영국함대가 출항준비 명령을 받았다는 보고가 이어졌다.[56] 심지어 총리아문도 영국이 암암리에 일본을 돕고 자국 상선의 용선을 막고 있는 점을 감안, 이홍장에게 타국의 선박 용선을 제의(7.20.)하고 있었다.[57] 따라서 일본연합함대에 의한 대청(對淸)개전은 영국해군과의 공조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

연합함대 제1유격대 사령관 해군소장 쓰보이 고조(坪井航三)가 이토 사령관으로부터 아산만 부근을 정찰하라는 명령을 받고 아산만 外海 풍도(豊島) 앞바다에 도착한 것은 7월 25일 새벽이었다.[58] 쓰보이 제독이 아산만 방면에서 북상하는 청해군 순양함 제원(濟遠)과 광을(廣乙)을 확인한 것은 6시 30분경이었다. 이 순양함들은 이화양행에서 용선하여 청군을 아산으로 수송한 영국 상선 '애인(愛仁)'호

54) Красный Архив. 1932. Т. 1-2. Донесение военного агента в Китае. 23 (11) июля 1894 г.

55) Красный Архив. 1932. Т. 1-2. Депеша посланника в Токио министру ин. дел. 8 июня (27 мая) 1894 г.

56) Красный Архив. 1932. Т. 1-2. Телеграмма посланника в Токио министру ин. дел. 23 (11) июня 1894 г.

57) 總署 → 李鴻章(1894.7.20/光緖二十年六月十八日), 『李鴻章全集』 24, 顧廷龍·戴逸 主編(合肥: 安徽敎育出版社, 2007) p.147. "英暗助倭 故阻雇英輪 如須運兵 能雇他國船否".

58) 原田敬一, 『日淸戰爭』, p.51-52. 제1유격대는 3척의 순양함(旗艦 요시노(吉野), 나니와(浪速), 아키쓰시마(秋津洲)로 구성되었다.

www.kci.go.kr

와 '비경(飛鯨)'호의 호송 임무를 완수(7.23.)하고 대고(大沽)로 회항하던 중이었다. 고승호를 호송하기 위함이었다.

7월 25일 청·일 양국 함대가 조우한 풍도해전은 일본의 압승으로 끝났다. '광을'은 폭파되었고 '제원'은 패주하였다. 도주하던 '제원'을 추격하던 '나니와(浪速)'와 '요시노(吉野)'는 덕적진(德積鎭) 울도(蔚島)부근에서 대고에서 출발(7.23.)하여 아산으로 향하던 고승호 및 포함 조강(操江)과 조우했다. 조강은 항복했다. 그러나 고승호는 영국 상선 깃발을 게양했기 때문에 '나니와'는 오전 9시 15분경 고승호에 정지신호를 보내 투묘(投錨)후, 사관을 보내 고승호의 서류심사와 선박을 임검(臨檢)했다. 그 결과 나니와호 선장 도고헤이하치로(東鄕平八郎)는 고승호가 청국군대 수송선임을 확인하고 '나니와'호를 따라오라고 명령했다. 고승호 선장 토머스 골즈워디(Thomas R. Galsworthy)는 동의했으나, 탑승했던 청국장교들은 이에 반대하고 선장을 위협해서 출발지인 대고(大沽)로 회항하도록 협박했다. 따라서 청국으로 회항할 수 있도록 허락해줄 것을 '나니와' 함장 도고제독에게 요청하는 것이 고승호 선장이 할 수 있는 마지막 해법이었다.[59]

도고함장은 선장의 요청을 묵살했다. 그는 고승호를 포획하여 사세보항으로 끌고 가는 것이 유혈사태의 방지책으로 판단했던 반면, 청국 장교들은 일본의 관대함을 기대하지 않았다. 도고 함장이 고승호를 포격을 가해 격침시킨 것은 이 배가 선장을 협박한 청국군에 점거된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이었다.[60] 고승호 탑승원 가운데 도고 함장이 보낸 구명정에 구조되어 수용된 3명(선장, 1등 운전수, 조타

59) Takahashi Sakue, *Cases on International Law during the Chino-Japanese war*, pp.28-30.

60) 原田敬一, 『日淸戰爭』, pp.70-71.; Takahashi Sakue, *Cases on International Law during the Chino-Japanese war*, p.31. 고승호는 오후 1시 10분에 피격되어 1시 46분 완전 침몰했다.

www.kci.go.kr

수)[61]과 울도에 상륙한 147명을 제외하고 1천여 명이 익사했다. 그럼에도 수장된 1천여 명의 청국 군인보다 고승호의 침몰이 큰 반향을 일으킨 것은 그것이 영국선적이었기 때문이었다.[62]

교전국이 아닌 제3국 선박인 고승호 격침사건은 침몰 선박에 대한 배상책임을 둘러싼 지리한 법리공방으로 이어졌다. 공방의 초점은 책임소재를 가리는데 맞춰져 있었고 핵심쟁점은 격침의 합법성이었다. 합법성과 관련하여 검토해야할 문제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청일전쟁 개시(開始) 시기이다. 격침이 이루어진 시기가 과연 전시(戰時)였는지를 따져야했기 때문이다. 둘째, 고승호가 나포된 선박임에도 격침시킨 것은 정당한 행위인지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 왜냐하면 고승호는 투묘상태에서 臨檢을 받음으로써 정지상태에서 피격되었기 때문이었다. 셋째, 고승호의 침몰장소도 문제가 되었다. 조선은 교전국이 아닌 중립국인지 여부도 밝혀야할 문제였다.[63]

청일전쟁 시점에서는 선전포고를 전쟁 개시로 하는 국제법이 성립되지 않았다.[64] 이는 선전포고에 대한 유럽열강의 일치된 합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선전포고의 필요성을 강조한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대륙학파가 존재했던 반면 공식적인 선전포고의 필요성을 중시하지 않았던 영국학파로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선전포고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거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대내적으로 선전포고는 공식적 전쟁선언이 참전을 위한 국민의지의 표현이므로, 선전포고의 부재는 국가주권개념에 위배되며 둘

61) 『日本外交文書』, 第27卷 第2冊, pp.368-371.

62) 陸奥宗光/김승일 역, 『蹇蹇錄』, 범우사, 1994. pp.150-152. 영국언론에서는 1) 일본해군이 대영제국의 국기를 모독하였고, 2) 일본의 행위는 전쟁이 시작되기 이전인 평화적 상황에서 행한 포악한 행동이기 때문에 3) 일본정부는 침몰선박의 주인과 이 사건으로 생명과 재산을 잃은 영국臣民에게 상당한 배상을 해야 한다고 격앙된 분노를 터트렸다.

63) Takahashi Sakue, *Cases on International Law during the Chino-Japanese war*, pp.42-51.

64) 原田敬一, 『日淸戰爭』, pp.62-63.

www.kci.go.kr

째, 대외적으로도 선전포고는 교전국과 중립국을 분리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선전포고 무효론의 근거는 첫째, 통신기술의 발달과 전신의 속도는 선전포고와 개전행위 사이의 간격을 단축시킴으로써 선전포고의 의미를 상쇄시켰고 둘째, 적대행위의 시작은 개전의지를 표명한 것이므로 별도의 서면을 통한 개전선언은 공허한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일본은 전쟁이 실제로 시작된 시점을 전쟁개시로 보는 실전설(實戰說)을 수용한 영국의 입장을 따르게 되었다.[65]

실전설을 따를 경우, 전쟁이 실제로 시작된 시점은 언제로 보아야하는가? 고승호격침의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쟁은 침몰 이전에 개시되었다는 것이 확정되어야했다. 따라서 일본인 국제법학자들은 청일전쟁의 개전 시기를 풍도해전에 소급 적용하고자 하였다. 개전시기결정 문제는 고승호의 배상문제와 결부되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공식적인 선전포고가 없었던 상황에서 고승호의 격침이 전시에 발생했다는 억지 논리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은 선전포고를 전쟁규범화 해야 할 당위성을 제공하였다. 그 결과 선전포고의 국제법화는 향후 헤이그평화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할 의제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66]

개전시점에 대한 일본학자들의 견해는 육군과 해군의 입장으로 나뉜다. 일본육군의 법률고문으로 복무했던 아리가 나가오(有賀長雄)는 청국이 한국의 내정개혁에 대한 일본의 기대를 저버리고 조선으로 추가병력을 파견했을 때, 이러한 적대적 행동이 개전의 표식이라고 주장했다.[67] 반면 일본해군의 법률 자문관이었던 다카하시 사

65) Douglas Howland, "Japan's Civilized War: International Law as Diplomacy in the Sino-Japanese War (1894-1895)", *Journal of the History of International Law,* 9 (2007), p.191.

66) James B. Scott, *The Proceedings of the Hague Peace Conferences,* Oxford Universuty Press, 1920, pp.623-625.

67) 有賀長雄, 『日淸戰役國際法論: 附·佛國學士會院講評』, 陸軍大學敎, 明治 29年

www.kci.go.kr

쿠에(高橋作衛)는 아리가의 주장은 전쟁준비를 전쟁개시로 간주했다고 비판하고 청국의 실질적인 교전행위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고승호 침몰 몇 시간 전에 벌어진 풍도해전에서 청국순양함이 일본군함에 먼저 포격을 가하면서 전쟁이 발발했다고 주장했다. 풍도해전에서 누가 먼저 발포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68] 일본정부는 다카하시의 주장을 공식채택(9.10.)했다.[69] 따라서 풍도해전은 공식적인 선전포고 없이 이루어진 교전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1894년 7월 25일 풍도해전 개전설이 공고화되기 위해서는 일본에 한정하지 않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정설이 되어야 했다. 이를 위해 이해당사국인 영국의 동의가 무엇보다 필요했다. 영국이 풍도해전(7. 25.) 개전설을 인정한다는 것은 곧 고승호 격침에 연루된 일본 해군에 면죄부를 주는 의미였기 때문이었다. 이는 동시에 침몰한 고승호의 배상책임이 일본해군에서 청국정부로 넘어가는 효과도 지니고 있었다.

(1896), pp.34-35. 아리가의 주장에 따르면, 敵抗은 청국이 兵員을 派出하였기 때문에 일본이 그에 대응하기 위해 군함을 파출했던 날, 즉 7월 23일을 전쟁개시일로 보아야 하며 이는 高陞號 굉침(轟沈) 수일전의 일이었다.

68) 다보하시 기요시(田保橋潔)는 "7월 25일 아산만 풍도 앞바다에서 조우한 청·일 양국함대 중에 어느 쪽이 먼저 발포해서 전단을 열었는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일본해군 軍令部에서 편찬한 『27·8년 해전사』에는 "오전 7시 52분 양측의 거리가 거의 3천미터로 근접했을 때 청군함 제원이 먼저 우리를 향해 발포했다"라고 기술되어 있지만, 제원과 광을을 통솔했던 부장 방백겸(方伯謙)의 회고록인 『원해기문(寃海紀聞)』에 따르면, 그는 전혀 전투를 예상하지 못했고, 전투준비를 명하기도 전에 우세한 일본 군함이 맹격을 가했다는 것이었다. 田保橋潔, 김종학 옮김, 『근대일선관계의 연구 下』, 일조각, 2016. p.532.

69) Douglas Howland, "Japan's Civilized War", p.191.

www.kci.go.kr

4. 고승호 배상책임을 둘러싼 법리공방과 英淸의 정치적 타협

고승호 침몰사건에 대한 영국의 입장은 일본해군의 공격행위에 대한 비판에서 이를 수긍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비판의 요지는 선전포고가 없었던 상황에서 중립국 상선을 격침시킨 일본의 행위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영국에 대한 적대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립국 선박이 개전 이전에 공식통보를 사전에 받지 못할 경우, 중립 의무의 이행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었다. 영국극동함대 사령관 프리맨틀(E.R.Fremantle) 제독이 일본해군의 고승호 격침을 비판하고 '나니와'호 책임자를 체포하여 처벌을 강력히 요구했던 것도 일본책임론의 반영이었다.[70]

그럼에도 일본책임론은 고승호 사건에 대한 영국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영국외무성이 프리맨틀 제독으로 하여금 자제하도록 훈령해줄 것을 해군성에 요청한 것도 이러한 방침 때문이었다. 주지하다시피 영국정부는 시베리아철도를 부설중인 러시아에 맞설 잠재적 동맹국 일본이 필요했다. 따라서 교전국의 권리는 적대행위의 시작과 더불어 효력을 갖는다는 왕립해군대학의 국제법 교수인 로렌스(T.J. Lawrence)의 해석이 영국정부의 공식입장으로 채택되는데 일조했다.[71] 요컨대 '나니와'호의 행위는 선전포고 이전이라 하더라도, 풍도해전을 계기로 정당성을 갖는다는 것이었다.

이에 고승호는 중립국 선박이 아니라 청국의 수송선으로 보아야

70) Douglas Howland, "The Sinking of the S.S. Kowshing: International Law, Diplomacy, and the Sino-Japanese War", *Modern Asian Studies 42, 4* (2008) pp.682-683

71) Douglas Howland, *International Law and Japanese Sovereignty - The Emerging Global Order in the 19th Century*, Palgrave Macmillan, 2016, pp.106-107.

www.kci.go.kr

한다는 견해가 등장한 것도 일본책임론을 면해줄 수 있는 새로운 논리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일본의 행위를 정당화하는데 기여한 영국의 국제법 학자들은 캠브리지 대학교의 웨스트레이크(J. Westlake)교수와 옥스퍼드 대학교의 홀랜드(Holland)교수였다. 웨스트레이크는 타임즈(The Times)에 기고(1894. 8.3.)한 기사에서 중립국 선박으로서의 고승호 지위를 부정했다. 그의 주요 논거는 다음의 3가지였다. 첫째, 고승호가 영국상선이고 영국기를 게양한 것은 인정되지만, 동시에 분명한 것은 고승호가 청국에 수송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이같은 서비스는 일종의 교전행위로서 영국깃발과 소유권으로부터 보호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었다. 둘째, 일본은 단지 선전포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승호를 교전국 선박으로 간주하는 것에 방해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선전포고 없이 개전하는 것은 나쁜 관습(bad habit)이지만 과거 오랜 기간 관례화되어 왔기 때문에, 19세기 후반에 선전포고 사례가 정형화되었다고 해서 그러한 관습이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국이 교전국이라면 교전국에 수송서비스를 제공한 행위도 교전행위였다는 것이다. 셋째, 고승호에 승선한 청병(淸兵)들이 조선으로 향한 이유는 주한일본군을 축출하려는 목적이었고 고승호 선상에서 보여준 청병의 행위는 호전적이었기 때문에 일본은 이 배를 격침시킬 필요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72]

홀랜드 교수의 타임즈 기고문(1894.8.7.)은 고승호 사건에 대해 들끓고 있는 영국여론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제안했다. 고승호 격침 소식이 런던에 전해지자 "해적과 같은 행위", "선전포고 없는 전쟁", "영국기에 대한 모독", "일본지휘관 처벌"과 같은 말의 성찬이 이뤄지고 있음을 지적한 홀랜드는 실제 사실은 이와 다르며 일본은

72) Takahashi Sakue, *Cases on International Law during the Chino-Japanese war*, pp.38-40.

www.kci.go.kr

무죄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의 논거는 다음의 두 가지였다. 첫째, 선전포고가 있기 전에 이미 전쟁 상태가 존재했다는 것이다. 영미법(英美法)에서는 전쟁은 선전포고의 뒤를 이어 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교전 일국의 적대행위와 더불어 시작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는 것이다. 둘째, 고승호 선장은 일본군함 함장의 정지 명령을 받았을 때, 전시 상황임을 인식했다는 것이다. 고승호는 중립국 선박임에도 교전국의 수송 서비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기의 게양은 무의미한 것도 알았다.[73] 따라서 일본에 적대적인 교전국의 원정 군대를 저지하고 그 수송선을 나포하기 위해 무력을 행사한 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홀랜드 교수는 일본해군이 고승호가 격침되어 물에 빠진 청국병사들에 대해 사격을 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증거가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만일 그런 일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교전국간의 고충일 뿐 중립국의 권리와는 무관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다만 일본함장의 행위를 명예 혹은 인도주의 원칙에 의해 평가하는 것은 또 다른 과제라고 결론지었다.[74]

영국정부가 고승호 격침 소식이 런던에 알려지자 즉각 법학자들을 동원하여 일본을 옹호하고 나선 것은 잠재적 동맹국에 대한 정책적 배려였다.[75] 킴벌리 외상이 조약개정은 일본에게 청국에 대한 승전보다 훨씬 좋은 것이라고 언급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신영일통상항해조약이 체결된 지 9일 만에 발생한 고승호 사건은 영국에게 일본이 서구문명권의 "위대한 국가공동체(the great family

73) Douglas Howland, "The Sinking of the S.S. Kowshing", pp.684-685.

74) Takahashi Sakue, *Cases on International Law during the Chino-Japanese war*, pp.40-42.

75) 홀랜드와 웨스트레이크 교수는 영일동맹이 체결되었던 1902년 일본 국왕으로부터 일본제국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Douglas Howland, *International Law and Japanese Sovereignty - The Emerging Global Order in the 19th Century*, p.103.

www.kci.go.kr

of nations)"의 성원으로 취급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과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풍도해전에서의 압승이 그 가능성이었다면, 고승호의 부상병 및 조난당한 청국병사들을 구조하기보다는 그들에게 사격을 가한 행위는 그 한계라 할 수 있었다.[76]

영국 외무성이 '나니와'호의 무장보트가 고승호의 조난당한 청병들에 대해 사격한 사실에 대해 침묵한 것은 주목할 만했다. 유럽여론의 비난이 있었지만, 청일전쟁 시기 교전국의 부상병, 전쟁포로, 병든 군인들에 대한 의료지원과 구호를 규범화한 제네바협약이 해전법으로 발효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 일본의 행위는 도덕과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비난받을 수 있는 문제였지만 국제법 위반은 아니었다.[77] 청일전쟁에서는 교전국이 해전에서 적국의 전상자들을 보살펴야 할 의무가 법제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영국정부가 일본해군에 면죄부를 주면서 최대의 현안으로 등장한 문제는 고승호의 배상 관련 청국정부의 책임여부였다.[78] 그러나 관

76) S.C.M. Paine, *The Sino-Japanese War of 1894-1895,*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p.134. 이홍장의 군사고문으로 고승호에 승선했다 구조되었던 독일 육군포병 소령 콘스탄틴 폰 한네켄(Constantin von Hanneken)이 제물포 주재 영국영사에게 제출한 진술서(1894.7.28.)에서는 고승호가 피격되면서, 승선해있던 淸兵들이 바다로 뛰어들자, '나니와'의 무장보트가 물에 빠진 청병과 침몰하는 고승호를 향해 사격했던 사실들이 보고되었다. 그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또한 침몰중인 고승호 갑판에서 물에 빠진 청병들을 향해 사격했던 사실들도 언급되었다. 한네켄은 고승호에서 물에 빠진 청병들을 향해 사격한 것은 "아마도 자신들이 살지 못할 바에는, 그들의 동료들도 죽어야만 한다는 야만적인 생각을 했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그는 고승호가 어뢰에 피격된 지 약 1시간 반 만에 완전 침몰했다고 증언했다.(Mr. von Hanneken's statement 28th July, 1894. *FRUS.* 1894. pp.45-47.)

77) Douglas Howland, "Japan's Civilized War", p.194. 제네바협약(1864.8.22.)은 1864년 야전군의 병상자들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64개조의 국제법의 규칙들로 이루어졌다. 서구열강은 陸戰에 국한되었던 이 협약에 추가조항을 첨부하여 해전에 적용하고자 제2차 제네바회의를 개최(1868)하였으나, 해전법으로 법제화되지 못했다. 일본은 1886년에 이 협약에 서명했었다. 제네바협약을 보완하여 해전법으로 법제화하는 문제는 1899년 제1차 헤이그평화회의에서 구체화되었다.

78) 陳尙寒, 「高陞號事件中英國政府態度轉變原因新論」, 『河北社範大學學報』, 第32卷

www.kci.go.kr

건은 청국정부가 영국과 일본이 만들어낸 고승호 침몰 시나리오의 수용 여부였다. 선전포고가 없었더라도 풍도해전에서 청·일 해군간의 교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전쟁 상황이 존재했고, 고승호는 중립국 선박이 아니라 교전국의 군대수송을 지원했던 교전도구였다는 논리는 고승호의 격침 이후 일본과 영국정부가 고안해낸 시나리오에 불과했다. 청국이 이를 순순히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였다. 결국 고승호 사건은 영국과 청국간의 배상책임을 둘러싼 국제법적 다툼의 단초가 되었다.

영청간의 법적투쟁에서 피해자는 당대의 세계 패권국이었던 영국이었다. 불법의 혐의를 받고 있는 국가는 조약법에 의해 영국과 불평등관계에 있었던 청국이었다. 양국이 서구의 국제법에 따라 손해배상 문제를 다투게 된다면 일본과 달리 아직 문명의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약자가 패소하게 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 될 것이었다. 따라서 고승호 사건을 둘러싼 영·청간의 법리 공방기간은 청국이 영국의 배상요구를 수용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고승호의 배상책임을 둘러싼 영·청간의 공방은 8년간 지속되었다. 이는 영·일의 논리 구조가 청국을 설복시키는데 매우 취약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청국이 고승호 배상 요구를 결국 수용한 이유는 법리공방에서의 패배 때문은 아니었다. 오히려 의화단(1899-1900) 사건 이후, 대외적 위상과 입지가 크게 위축된 청국이 영국의 압박에 끝까지 버텨내지 못했던 역학관계의 영향이 더 컸다.

고승호 배상책임을 일본이 아닌 청국에 강요하기 위한 영국의 논리가 갖는 양대 약점은 선전포고의 부재와 조선의 독립훼손이었다. 첫째, 선전포고는 통상적으로 교전 상대국뿐만 아니라 중립국에게도 개전의 사실 통보가 주 목적인바, 중립국에 중립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전포고가 부재하여 중립국의 신민(臣民)이 개전

第3期, 2009. pp.134-137.

www.kci.go.kr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합법적인 기업 활동에 참여하면서 피해를 입었다면, 선전포고 이전에 전투행위를 한 교전국이 보상을 해야만 했기 때문이었다. 둘째, 교전국이 중립국의 영토에서 교전권을 행사하는 행위는 중립국의 독립과 주권의 훼손에 해당하기 때문이었다. 고승호 사건은 일본순양함 '나니와'가 조선해역을 항행하던 중립국 선박을 정지시켜 임검하고 수송선으로 판명되자 사세보로 끌고 가려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나니와의 행위는 명백한 조선의 독립과 주권침해 행위였다.[79]

청국이 영국과 고승호 배상책임을 둘러싼 법리공방에 적극 참여한 계기는 라풍록의 주영공사 임명(1897)이었다. 그는 이홍장의 막료이자 고승호 고용계약을 담당했었기 때문에, 뇌경색으로 쓰러졌던(1896년 8월) 전임 공사 공조원(龔照瑗)[80]의 후임으로 임명되면서

---

79) Takahashi Sakue, *Cases on International Law during the Chino-Japanese war*, pp.48-50. 다카하시는 이 책의 제1부 제1장에서 고승호 문제를 다루면서 "조선은 중립국이 아니라 일본의 동맹국(Was Korea an ally of Japan or a neutral at that time?)"이었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조선해역에서 벌어진 '나니와'호의 국제법 위반행위를 피해 가고자 하였다. 그 논거는 조선의 관리(外務督辦)가 주한일본공사에게 조선정부를 대신하여 아산에 있는 청병의 축출을 요청했던 날이 바로 7월 25일이라는 것이었다.("大院君新政府組織中ナル旨報告ノ件", (1894.7.28.), 『日本外交文書』, 第27卷 第1冊, p.631.). 이에 다카하시는 7월 25일 조선이 일본의 동맹국이 되었기 때문에, 풍도해전이 벌어진 조선해역은 중립지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조선해역에서 일본의 臨檢과 搜索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논의는 의미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주한일본공사가 조선정부의 요청을 본국정부에 알리기 위해 부산까지 공문을 우편으로 발송(7.25.)하여 부산에서 陸奧외상에게 타전(7.28.)하는데 3일이 걸렸다. 당시 朝日간의 동맹조약 체결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은 차치하더라도, 나니와호 함장 도고 헤이하치로(東鄕平八郎)가 조일동맹(朝日同盟) 체결사실을 통보받고 풍도해역을 동맹국의 해역으로 간주하여 고승호를 임검하고 수색한 것은 아니었다. 당시는 무선통신이 없었기 때문에 함장이 이 사실을 전혀 인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카하시의 주장은 고승호 사건이 발발한 풍도해역은 중립해역이 아니라 동맹국의 해역이었다는 궤변을 짜 맞추기 위한 억지주장에 불과했다.

80) 王木, 「高陞號事件: 中日甲午戰爭的导火索」, 湖北檔案, 2013年 11期, p.35. 공조원은 이홍장과 인척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1893년 주영공사에 임명되었다. 외교경험이 없었고 영어와 불어를 구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승호를 둘러싼 영일청 3국

www.kci.go.kr

영국정부와 본격적인 법리공방을 준비했다. 영국외무성이 고승호의 선주였던 인도-차이나 윤선공사(印中輪船公司)를 대리하여 청국정부에 손해배상을 요구(1896.4.27.)하고 조속한 타결을 독촉했음에도, 그는 협상을 지연시키며 법리적 반격을 도모했다.[81]

라풍록이 솔즈버리(Lord Salisbury) 외상에게 보낸 각서(1898.8.22.)에는 청국의 입장이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었다. 첫째, 고승호의 청병 수송은 조선국왕의 원군(援軍)요청에서 비롯된 것으로 일본군에 적대하기 위한 교전행위로 간주할 수 없다. 둘째, 고승호 선장은 격침 당시 전시상황이 성립되었음을 알 수 없었다. 영국과 일본은 고승호 격침 몇 시간 전에 청일간의 풍도해전이 이미 발생하여 전시상황이 존재했음에도 선장은 이를 무시했다고 논리를 완성했으나, 무선통신이 부재한 상황에서 선장이 이 사실을 알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 요지였다.[82]

라풍록은 교전국이 제3국의 상선에 개전상황을 공식 고지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고승호는 중립국 선박의 지위를 갖게 된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였다. 더욱이 중립선박을 임검하고 수색하는 교전국의 권리는 중립 국가들이 외교채널을 통하여 개전을 공식 통보 받은 후에야 비로소 발효되기 때문에, 고승호는 청국의 출발항구인 대고(大沽)로 회항(回航)하도록 허락되었어야 했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따라서 주영청국공사는 고승호를 격침시킨 일본의 행위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83]

고승호가 중립국 선박이라면, 영국정부는 선박소유주가 청국정부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행위를 중단시켜야 했다. 오히려 영국정부는 중립국 선박을 불법 수색한 교전국에 불법 수색행위로 야기된

간의 힘겨루기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81) 杜志明, 「晩淸駐英公使羅豊祿與高陞號賠償案」, p.38-39.

82) 王木, 「高陞號事件: 中日甲午戰爭的導火線」, p.35.

83) Douglas Howland, "The Sinking of the S.S. Kowshing", pp.691-692.

www.kci.go.kr

손실배상 청구권을 행사해야 했다. 따라서 중립국 선박을 불법적으로 임검, 수색한 일본해군이 불법행위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중립국 선박을 격침시킬 권한을 가졌다는 주장은 억지에 불과했다.

더욱이 라풍록은 일본해군에 면죄부를 주었던 영국 국제법학자 홀랜드의 주장에 근거하여 청국 면책론(免責論)을 제기했다. 홀랜드는 풍도해전으로 전시상황이 존재했기 때문에 청병을 수송했던 고승호의 서비스를 교전행위로 간주했었으나, 청국이 실제로 교전국이고 고승호가 청국의 해군과 육군 작전에 참여했다면, 영국선주들이 고승호의 침몰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어떠한 근거도 없는 것이었다. 만일 청국이 교전국이 아니었다면 고승호에 대한 불법수색과 격침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에게 물어야만 하는 논리가 성립되었다.

영국정부는 궁지로 몰려가고 있었다. 한편으로 청국 면책론을 제기한 라풍록의 논리를 논박할 대응논리를 찾지 못했고, 다른 한편으로 고승호의 선주였던 인중윤선공사(印中輪船公司)의 이사 윌리엄 케스위크(William Keswick)가 영국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었기 때문이었다. 케스위크는 영국의 청국에 대한 상업적 이익을 대변하던 중국협회(The China Association) 회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고승호의 손해배상에 대한 영국정부와 외무성에 대한 압박이 강화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영국외무성이 청국공사에게 해법으로 제안(1899.3.18.)했던 대안이 바로 중재(仲裁)였다.[84]

청국정부가 고승호 사건에 대한 영청간의 의견대립의 해법으로 중재방식을 수용한 것은 자국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라풍록 공사는 영국외무성에 주영미국대사 조셉 쇼트(J.H. Choate)를 공증인으로 초빙하기로 요청하고 7개조로 구성된 공증인 장정(中英兩國爲高陞輪案聘淸公正人判斷章程)을 영국정부에 제출했다.

84) Douglas Howland, “The Sinking of the S.S. Kowshing”, p.697.

www.kci.go.kr

장정의 특징이 집약된 제1조는 쇼트대사가 판단해야 할 고승호 사건에 대한 핵심쟁점이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는 청국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었다. "고승호는 영국회사 선박이고 일본 나니와호에 의해 격침되었던 사실에 대해 쇼트 대신(大臣)을 청하여 경위를 명확히 밝힌다. 첫째, 나니와호의 행위가 합리적인 것이었는지, 나니와호의 행위가 공법(公法, public law)에 위배되지 않는지를 살피고 둘째, 배를 빌린 청국과 배를 빌려준 선박회사 중 누가 선박의 파손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해 쇼트 대신에게 판단을 청한다. 파손된 선박이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쇼트 대신이 재량껏 평가한다. 아니면 다른 공증인(notary public)을 따로 파견하여 선박의 가치를 평가할 것인가는 쇼트 대신의 편의에 따른다"는 것이었다.[85]

영국은 장정 채택을 거부했다. 영국은 비록 먼저 중재방식을 제안했음에도, '나니와'의 고승호 격침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자 한 장정의 내용을 수용할 수 없었다. 청국은 장정 6조에서 밝힌 대로 사안을 신속히 처리하고자 하였던 반면,[86] 영국은 서두르지 않았다. 이는 영국이 중재를 채택한 목적이 청국과 달랐기 때문이었다. 1901년 1월 18일 타임즈(The Times)에 공개된 중재의 목적은 "책임소재는 청국이고 배상을 청정부로부터 받아야한다"는 것을 대중에게 알리는데 있었다. 영국 외무성은 고승호의 손해배상은 청국정부가 책임져야한다는 입장을 지속했다. 따라서 영국외무성이 중재에 회부하고자 한 사안은 청국정부가 책임져야할 배상금의 규모와 지급시기였지 일본의 책임을 따지려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87]

그렇다면 청국은 왜 다툼의 여지가 있었음에도, 고승호 침몰의 배상책임을 떠안아야 했는가? 영국과 일본의 억지논리에 의해 만들

85) 杜志明, 「晚清駐英公使羅豊祿與高陞號賠償案」, p.38.
86) 第六款 此案一经公正人判后, 即为定案, 两国国家均应速照办理, 不得再有翻异(杜志明, 「晚清駐英公使羅豊祿與高陞號賠償案」, p.38.)
87) Douglas Howland, "The Sinking of the S.S. Kowshing", p.698.

www.kci.go.kr

어진 청국책임론에 대해 청국정부는 끝까지 저항하지 못했다. 청국은 청일전쟁의 패전과 의화단 진압 과정에서 8개국 공동연합군에 의해 북경과 주요 거점들을 점령당함으로써 영국과 법리 공방의 동력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고승호 배상 책임을 둘러싸고 영청간에 전개된 국제법 공방은 재판이나 중재의 합법적인 방식보다는 양국간의 힘의 논리에 따라 결정되고 말았다.

고승호 사건의 배상문제는 북경에서 마무리되었다. 영국외무성은 승산이 없는 라풍록과의 교섭보다는 북경에서 개인외교의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협상전략을 수정했다. 신임 주청 영국공사 사토우(Ernest Satow)는 의화단 사태의 해결과정에서 친분을 쌓은 경친왕 혁광(奕劻)과 신임 주영공사로 임명된 장덕이(張德彝)와 대화를 시작했다. 양국간의 이견을 보였던 미결과제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고승호의 배상금 문제가 제기되자, 경친왕은 배상을 인정하되 배상금은 요구액의 절반만 지불하기로 타협하였다. 광서제에게 올린 상주(上奏)에서 혁광은 이를 "돈으로 평화를 샀다(花錢買平安)"고 완곡하게 표현했다.[88]

1903년 3월 청정부는 환율에 따라 白銀 31만 냥을 지불하여 정산을 마쳤다.[89] 고승호사건은 청일전쟁 최초의 국제법적 논쟁을 야기하면서 사건 발생 9년 만에 해결된바, 청일전쟁 대단원의 막이 내려졌다. 비록 청·일 양국간의 전쟁은 시모노세키 강화조약으로 마무리되었지만 고승호를 통해 표출된 동아시아 전쟁에 대한 영국의 개입은 영일동맹(1902)을 거쳐 러일전쟁으로 이어졌다.

---

88) 王木, 「高陞號事件: 中日甲午戰爭的導火線」, p.36.

89) Douglas Howland, "The Sinking of the S.S. Kowshing", pp.699-700. 고승호의 선주였던 인도차이나윤선공사는 당초 1894년 용선계약 당시 청국정부가 약속했던 40,000파운드를 기대했으나, 그들에게 최종 전달된 금액은 英淸양국의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었던 33,411파운드였다. 윤선회사가 이 금액의 배상금을 수령하게 된 것은 영국정부의 강요 때문이었다.

www.kci.go.kr

5. 맺음말

상술한바와 같이 청일전쟁은 교전당사국이었던 동아시아국가들이 서구의 국제법에 의해 관리되고 통제되었던 특징이 있다. 개전에서 종전과정 나아가 심지어 종전일로부터 8년이 지나 배상이 마무리된 고승호 사건에 이르기까지 서구인들이 만들어 놓은 규범과 그들의 법해석에 따라 전쟁의 진행방향은 반전의 연속이었다. 서구인들 특히 당대 세계의 패권국가인 영국의 간섭과 개입 여하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판가름 나는 상황이 연출되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따라서 영국의 적성국이었던 러시아 주도의 삼국간섭이 청일전쟁 종전 직후 곧바로 실행된 이유도 세계적 규모의 영러대결의 동아시아 판이 바로 청일전쟁이었기 때문이었다.

청일해군의 풍도해전에서 영국 상선 고승호가 격침된 사건은 이 전쟁이 동아시아 지역범주를 넘어서는 국제 전쟁이었음을 반증하였다. 청일개전 무렵 영국의 극동해군은 거문도로 출동하여 정박하였고, 독일의 포병장교 폰 헤네켄 소령은 이홍장의 군사고문으로 고승호에 승선하여 아산 상륙을 준비하고 있었다.

미국 역시 국제법에 따라 在日 청국인과 淸國 거주 일본인들에 대한 보호자 역할을 청·일 양국으로부터 위임받아 이를 수행했다.[90] 더욱이 청국의 공친왕(恭親王 奕訢)은 북경주재 미국공사관을 방문(1894.10.31.), 덴비(Charles Denby) 공사에게 美中天津條約(1858) 제1조의 거중조정(good offices) 규정에 따라 미국이 중재자로서 일본에 교전행위를 중지시키고 강화조약 체결을 주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91] 따라서 청일전쟁은 교전국이었던 청국, 일본,

90) Cui Zhihai, "The United States and the Sino-Japanese War of 1894-1895", *Social Sciences in China* Vol.36, No 4. 2015, pp.168-169.

91) "Mr. Denby to Mr. Gresham, October 31, 1894," in *American Diplomatic*

www.kci.go.kr

조선뿐만 아니라 서구열강과도 연동되었던 글로벌(Global)전쟁이 되었다.

영국정부가 고승호사건의 책임소재와 배상문제에서 일본을 배제시킨 사이 일본정부는 미국여론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언론공작을 전개했다. 고승호 침몰 당시 일본군함에서 물에 빠진 청국병사들을 향해 사격행위가 있었다는 증언들이 생존자들에 의해 청취되었기 때문이었다. 일본의 비밀정보기금(Secret Service fund)이 에드워드 하우스(Edward Howard House)를 포함한 미국작가들과 도쿄타임즈(Tokyo Times)의 편집자에게 전달된 것도 일본에게 유리한 보도를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92]

선전포고 이전에 발발한 일본해군의 기습공격을 정당화하기 위한 노력들은 성과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미국언론들은 고승호 사건에 보다 관대한 태도를 취했다.

『뉴욕트리뷴(the New York Tribune, 1894.8.1.)』은 "사소한 일들을 따지기 보다는 고승호는 사실상 일본에 맞서 전투행위에 참전했던 청국선박이었고 일본군함이 이를 격침시킬 충분한 권리를 가졌다"고 보도했다. 『뉴욕트리뷴』 8월 5일자 기사에서 뉴욕 주재 일본공사관의 참사는 "일본에 대한 미국언론의 보도에 감사"를 표했다. "전쟁 결과가 어떻게 되든, 위대한 공화국과 "동방의 양키형제(Yankee brother)"인 일본과의 유대는 오직 강화될 뿐"이라며 美日우호를 강조했다.[93]

결국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 러시아, 독일, 프랑스 등 서구열강은

---

and Public Papers: The United States and China, Series III, *The Sino-Japanese War to the Russo-Japanese War 1894-1905*, vol. 2, *The Sino-Japanese War I*, pp.274-277.

92) Jeffery M.Dorwat, *The Pigtail war: the American response to the Sino-Japanese war of 1894-1895.* Doctoral Dissertation of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1971. pp.40-42.

93) Jeffery M.Dorwat, *The Pigtail war.*

www.kci.go.kr

청일전쟁의 개전방지에 전력하기 보다는 일본의 대청개전을 묵인 또는 방조했다. 그럼에도 열강은 청일전쟁에서 보여준 일본의 전투력에 만족해하면서도 동시에 일본의 국제법 위반과 비인도주의적 행위들을 규제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직후 헤이그(Hague)에서 평화회의가 개최된 것은 결코 이와 무관하지 않았다.[94]

(원고투고일 : 2019. 10. 15, 심사수정일 : 2019. 11. 11, 게재확정일 : 2019. 11. 25)

주제어 : 청일전쟁, 국제법, 고승호, 헤이그평화회의, 영러대결

94) 고승호의 조난(遭難) 청병(淸兵)에 대한 사격 사건과 관련하여, 유럽열강은 그동안 미뤄왔던 "제네바협약 원칙들을 해전에 적용하기 위한 협약(Convention for the Adaptation to Maritime Warfare of the Principles of the Geneva Convention)을 1899년 제1차헤이그평화회의에서 마련하였다. 이후 이 협약은 러일전쟁을 거치면서 1907년 제2차 헤이그평화회의에서 보완되었다. James B. Scott, The Reports to the Hague Conferences of 1899 and 1907, Oxford: At the Clarendon Press, 1916. pp.709-714.

www.kci.go.kr

<참고문헌>

1) 1차 자료

『日本外交文書』

Красный Архив. 1932. Т. 1-2.

House of Commons Hansard.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894. Washington: Government Printing Offices, 1895.

2) 2차 자료

金容旭, 「淸日戰爭(1894-1895)·露日戰爭(1904-1905)과 朝鮮海洋에 대한 制海權」, 『법학연구』 49(1), 2008.

田保橋潔, 김종학 옮김, 『근대일선관계의 연구 下』, 일조각, 2016.

陸奥宗光, 김승일 역, 『蹇蹇錄』, 범우사, 1994.

박영준, 「청일전쟁」, 『한국외교사연구』(김용구, 하영선 공편), 나남출판, 1996.

서영희, 「청일전쟁·러일전쟁-한반도에서 벌어진 국제전을 바라보는 한국학계의 시각」, 『군사』 100, 2016.

조명철, 「일본의 대외전쟁과대본영의 운영실태 - 청일, 러일전쟁을 중심으로」, 『동양사학연구』, 147, 2019.

조세현, 「청프전쟁과 청일전쟁에서의 해전-해양관련 국제법 사건을 중심으로」, 『中國史硏究』 第84輯, 2013.

최덕규, 「글로벌전신네트워크와 서로전선의 접속」, 『세계역사와 문화연구』 45, 2017.

有賀長雄, 『日淸戰役國際法論: 附·佛國學士會院講評』, 陸軍大學敎, 明治29年 1896.

有山揮雄, 『情報覇權と帝國日本 III, 東アジア電信網と朝鮮通信支配』, 吉川弘文館, 2016.

坂根義久, 「靑木周蔵論 - 對英條約改正交涉と外交政略」, 『國際政治』,

www.kci.go.kr

1967卷 33号, 1967.

原田敬一, 『日清戰爭』, 吉川弘文館, 2008.

杜志明,「晚清駐英公使羅豊祿與高陞號賠償案」,『黑龙江史志』1期, 2014.

冯超,「甲午战争时期中国电报局的作用」,『安徽教育学院学报』25(5), 2007.

王木, 「高陞號事件:中日甲午戰爭的导火索」, 湖北檔案 11期, 2013.

陳肖寒, 「高陞號事件中英國政府態度轉變原因新論」, 『河北社範大學學報』. 第32卷 第3期, 2009.

Douglas Howland, "Japan's Civilized War: International Law as Diplomacy in the Sino-Japanese War (1894-1895)", *Journal of the History of International Law*, 9 (2007), "The Sinking of the S.S. Kowshing: International Law, Diplomacy, and the Sino-Japanese War", *Modern Asian Studies* 42, 4 (2008).

International Law and Japanese Sovereignty - The Emerging Global Order in the 19th Century, Palgrave Macmillan, 2016.

Fauziah Fathil, British Diplomatic Perceptions of Modernization and Change in Early Meiji Japan, 1868-90, Submitted for the Degree of PhD in History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University of London, 2006, Published by ProQuest LLC(2017).

James B. Scott, *The Proceedings of the Hague Peace Conferences*, Oxford University Press, 1920,

John Berryman, "British Imperial Defence Strategy and Russia: The role of the Royal Navy in the Far East, 1878-1898", *International Journal of Naval History*, Vol. 1, Issue 1, 2002.

Paine S.C.M. *The Sino-Japanese War of 1894-1895: Perceptions, Power, and Primacy*, Cambridge University

www.kci.go.kr

Press: 2003.

Perry John Curtis, “Great Britain and the Emergence of Japan as a Naval Power”, *Monumenta Nipponica*, Vol. 21, No. 3/4 (1966).

Takahashi Sakue, *Cases on International Law during the Chino-Japanese war*, London, 1899.

Нарочницкий, А.Л. *Колониальная Политика Капиталистических Держав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1860-1895,* ИАН С.Москва, 1956.

Пак Бэлла. *Российский Дипломат К.И.Вебер и Корея*, ИВ Р АН: Москва. 2013.

www.kci.go.kr

Sino-Japanese War and International Law of the Case of the Sinking of the S.S. Kowshing(1894-1903)

Choi, Deok-kyoo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law, the Sino-Japanese War is characterized by the absence of international consensus on the timing of its outbreak. Leaving aside the version of official declaration date of war(1 Aug. 1894), another influential version of beginning of hostilities(July 25, 1894) was closely related to the sinking of the British steamship Kowshing. In the late 19th century, There were two schools of European scholars of international law, the one saw a declaration of war as the beginning of the war, and the another who regarded the actual outbreak of the war as the opening. It was made at the second Hague Peace Conference (1907), by calling for international consensus for the legislation of the process on the opening of hostilities.

From the beginning of the war to the end of Kowshing case, where compensation was completed eight years after the Sino-Japanese war, the progress of the war was manipulated by British Government judg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law of war, This was the British Empire especially who had the hegemonic power of the world which influenced the outcome of the war by the way of interference and control the situation. So it was reasonable to followed Russian led Triple Intervention, soon after the conclusion of Shimonoseki Treaty from the view of the Anglo-Russian Rivalry.

In the end, the Western power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Britain, Russia, Germany, and France, condoned or aided Japan's opening of the Sino-Japanese War, rather than focusing on preventing it from opening up. Still, the Powers were satisfied with Japan's bellicosity shown in the Sino-Japanese War, but at the same time they were also keenly aware

www.kci.go.kr

of the need to regulate Japan'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laws and inhumane acts. It was a natural consequence that the Peace conferences were convened in the Hague right after the Sino-Japanese War and the Russo-Japanese War.

Keywords : Sino-Japanese war, International law, steamship Kowshing, Hague Peace Conference, Anglo-Russian Rivalry

www.kci.go.kr